

「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여, 구미시의 양성평등 시책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19조)
-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20조)
-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21조)
- 회의에 관한 사항(안 제24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성별영향평가법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「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」의 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금과 법적 근거가 없는 양성평등위원회 내용을 삭제하고,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내용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11조의2에 시·도 양성평등위원회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, 시 단위에 대한 근거는 없음. 이에 따라 구미시양성평등위원회를 둔 것은 행정적 오류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임.
- 한편, 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13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구미시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, 운영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여성가족부의 상위법에 따른 조례 제정 권고를 이행하는 것 또한 필요한 조치임.
- 집행기관에서는 자치법규의 제·개정 시 법적 근거와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보고,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시민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며,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는 신속하게 조치해야 할 것임.